

2021년도 세법개정안 의견서

2021. 3.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1년도 세법개정안 건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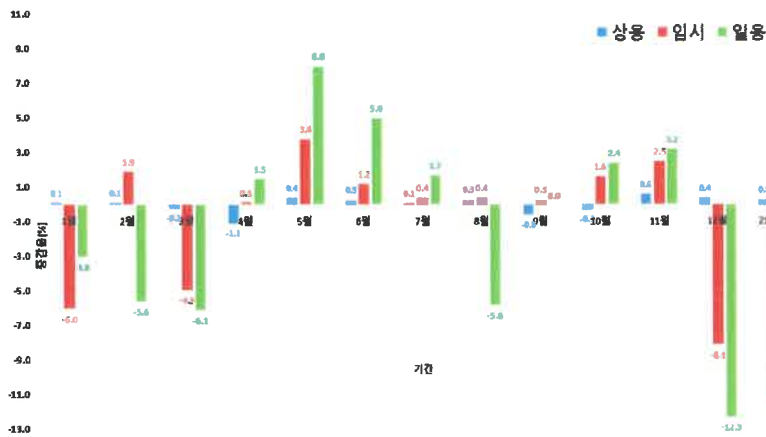
한국노총

I. 기본방향

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양극화 및 소득분배 악화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심화와 분배악화 극복을 위해선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재정 전략(저소득층 대상 지원금 확대, 안전망 확충 등)마련이 절실함.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집중도는 임시·일용 노동자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들과 같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집중돼 있음.

<2020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률 추이>



- 코로나 사태에서 정규직 임금은 323.4만 원으로 2.2% 증가. 반면, 비정규직은 171.1만 원으로 0.2% 감소하여 종사상 지위별 임금 불평등은 및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고 있음.

<고용형태별 임금 수준 비교>

	임금 노동자	고용형태별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19. 6~8월 평균 (만원)	264.3	316.5	172.9	186.0	180.6	207.0	92.7	185.8
'20. 6~8월 평균 (만원)	268.1	323.4	171.1	185.7	187.7	174.1	90.3	185.4
증감 (만원)	3.8	6.9	-1.8	-0.3	7.1	-32.9	-2.4	-0.4
증감률 (%)	1.4	2.2	-1.0	-0.2	3.9	-15.9	-2.6	-0.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2020.8월

소득 분위별 가계수지 (2020. 4/4, 통계청. 가계동향)

(단위: 천원, %, %p, 전년동분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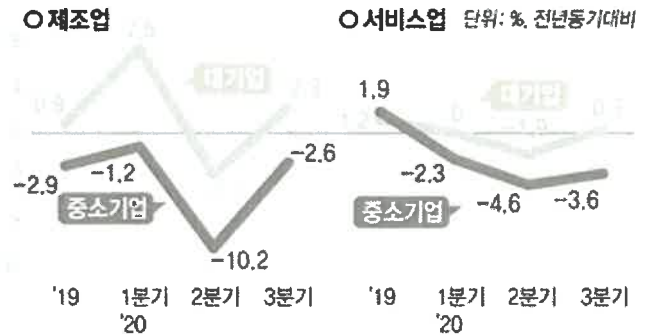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소득	1,640	1.7	3,275	0.1	4,628	1.2	6,231	2.0	10,026	2.7
경상소득	1,634	2.0	3,254	0.2	4,602	1.3	6,171	1.9	9,632	1.0
근로소득	596	-13.2	1,882	-5.6	3,031	0.0	4,279	0.0	7,214	1.8
사업소득	279	6.2	672	3.0	953	-5.7	1,236	-5.1	1,827	-8.9
가계지출	1,885	1.4	2,717	-2.4	3,621	-2.3	4,592	0.9	6,643	1.0
소비지출	1,620	1.8	2,188	-1.7	2,775	-3.1	3,435	3.4	4,512	-0.4
비소비지출	265	-0.8	529	-5.1	846	0.3	1,156	-6.0	2,131	4.3

-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구(하위 20%)의 근로소득은 13.2%나 급감하며 소득 4~5분위(상위 40%)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음. 특히, 정부와 지자체 재난지원금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서 저소득 계층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존재함.

기업규모별생산지수증가율비교

(선년동기대비, %)

		2019	20.1/4	2/4	3/4
제조업	(대기업)	0.9	7.5	-3.7	2.3
	(중소기업)	-2.9	-1.2	-10.2	-2.6
서비스업	(대기업)	1.2	0.0	-1.9	0.3
	(중소기업)	1.9	-2.3	-4.6	-3.6



주: 제조업은 매출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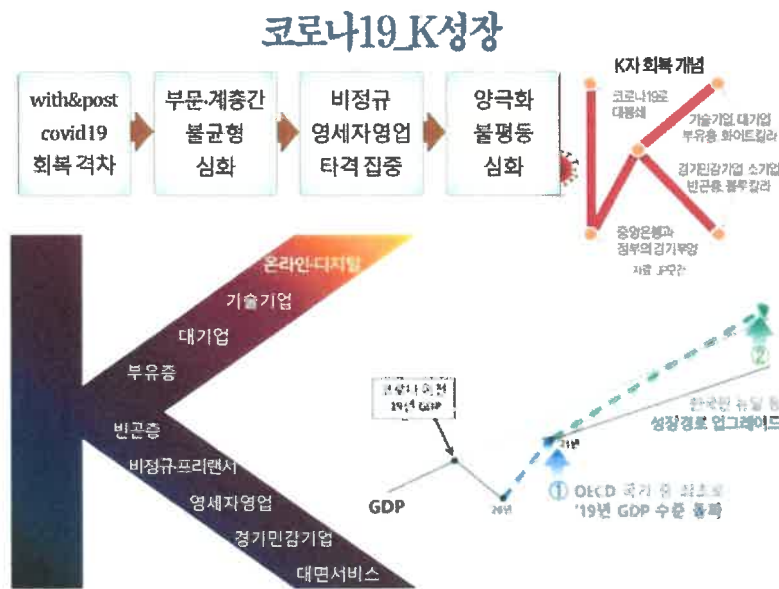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2020년 주요 대기업 영업이익률>

기업명	영업이익(전년대비 증감율)
삼성전자	35조9,939억원 (29.6% 증가)
현대자동차	1조6,410억 원 (40.9% 증가)
SK텔레콤	1조3,493억 원 (21.8% 증가)
카카오	4,560억원(121%증가)
CJ	1조3,595억원(51.6%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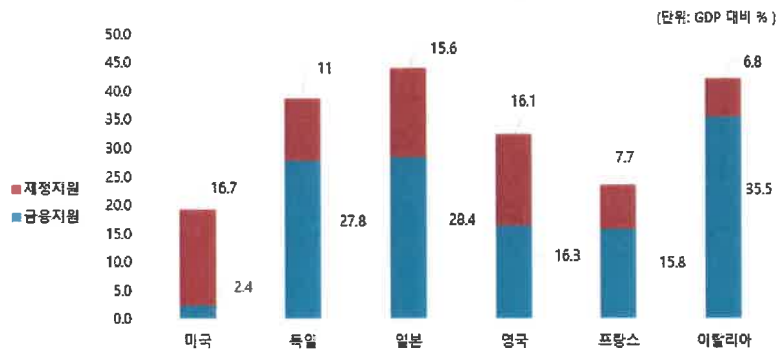
-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요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막대한 수준으로 증가함.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곳은 대기업(일부 서비스 업종 제외)이 아닌 중소기업 및 영세 소기업들에 집중되었음.

2)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을 통한 위기 극복



- 큰 틀에서 2021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정규직,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 취약계층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재정 전략이 되어야 할 것임.
- 특히, 현재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및 금융지원책들을 제시하고 있음.

<주요국의 GDP대비 재정·금융 지원 규모 비율>



자료: IMF Fiscal Monitor -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2020.12.31. 기준) - 2021.1.

-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WITH & POST 코로나 상황을 대비하여 적극적인 재정 전략에 기반을 둔 세법개정안이 마련돼야 할 것.

II. 세부 건의안

[1] 한시적인 '초과이익공유세(가칭)' 운영

- 코로나 상황에서 일부 업종(온라인 및 홈쇼핑 등) 비대면 특수를 누리며 호황을 누리고 있음.

<2020년 주요 홈쇼핑 기업 영업이익률>

기업명	영업이익(전년대비 증감율)
CJ오쇼핑	1,792억원 (20.1% 증가)
GS홈쇼핑	1,579억 원 (31.5% 증가)
현대홈쇼핑	1,543억 원 (2.6% 증가)
롯데홈쇼핑	1,250억원 (4.1%증가)
NS홈쇼핑	642억원 (20.5%증가)

-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코로나 특수를 누린 법인 기업들에 대해 한시적인 법인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코로나 위기상황을 신속하고 함께 극복하는 '연대적' 차원에서 법인세와 기타 모든 자산 및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에 부가세(5% 이상)를 한시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음.

[2] 미래를 대비한 목적세 도입 필요

- 산업의 급속한 디지털화(인공지능에 기반한 비대면화, 자동화 등),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세제도 정비가 요구됨.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과감한 확장적 재정지출을 촉구할 때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그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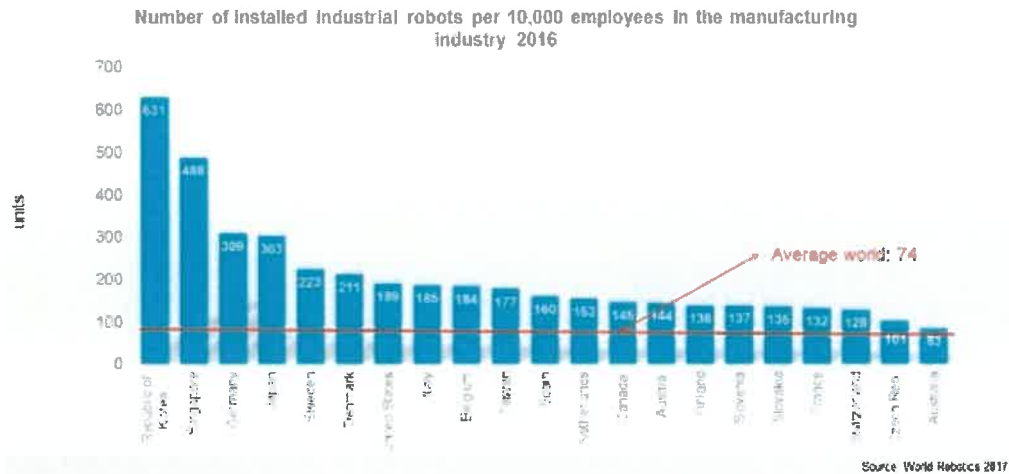
안으로서 디지털세, 로봇(자동화)세, 탄소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다만, 이와 같은 목적세의 세목 편성은 일반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저선 안 될 것이며,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법인 기업들 위주로 세목이 편성되는 방향을 고려해 봐야 할 것.

로봇세(자동화 세) 및 디지털세

- 급격한 자동화의 확산을 방지하고 인간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선 로봇세 도입이 필요함. 현재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로봇밀도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며 향후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임.
- 노동자 수의 감소는 결국 세수감소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비한 세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밀도>



탄소세

- 온실가스 저감 및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탄소세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임. 다만, 탄소세가 부과되더라도 현재 미봉책에 불과한 배출권 거래제 중복의 문제와 세금중대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돼선 안 됨

(3) 법인세 누진도 강화

- 법인세율은 현재 '3,000억 원 초과'에서 2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소득 여전히 영리법인 25% 적용 과표 구간을 인하하고 '3,000억 원 이상' 구간은 30%로 인상이 필요함.
- 특히, 경제 상황의 위기라는 명목으로 연구개발이나 투자촉진 차원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성이나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있는지 의문임. 실효세율이 OECD 최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실질 세 부담은 낮음.

- 특히,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해선 코로나 상황에서도 막대한 이윤을 창출한 법인들에 대한 '상생과 협력'의 임무를 수행하게 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노동자 등을 위한 '연대적'인 차원에서의 한시적인 법인세 상승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인세율>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 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 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42,000만 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42,000만 원
	3,000억 초과	25%	942,000만 원	3,000억 초과	25%	942,000만 원

[4]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자본이득세 과세 강화

- 소득 유형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금융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더욱 인하 (현행 연 2천만 원 이상 → 1천만 원으로 하향 필요)할 필요가 있음.
- 배우자 보유의 금융자산까지 추가로 고려할 때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춰서 담세력에 따른 조세 부담 원칙에 맞게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 금융자산이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배당소득세, 임대소득세는 종합과세화 하는 것이 필요함.

[5] 부동산 보유세 강화 필요

- 낮은 보유세 정책으로 인하여 '다주택자의 투기목적 주택보유를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 라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거래 시장 유도정책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모든 부동산 유형의 공시가격이 시가에 근접하게 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토지의 경우 일부 부동산 과다보유자와 대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보유세가 특히 강화돼야 할 것.

[6] 기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 현재 기업상속공제는 종전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공제금액도 종전 1억 원에서 기업 상속재산 100%(공제 한도 500억 원)로 확대되어야 할 것임.
- 현재의 제도는 기업 상속이 아닌 기업상속으로 변질된 것으로서 상속세 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대폭 축소돼야함. -
- 이를 위해 현재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를 조정하여 기업상속공제의 대상을 비상장기업, 중소기업으로 축소하고, 기업의 고유기술 등의 사전검증 및 수입 금액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업의 범위를 자산 규모까지 고려해서 정해야 함.

[7] 종교인 과세 특혜 중단

- 2018년부터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본격적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일부 국회의원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과세를 2년 더 유예할 것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종교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령을 수정하였음.
- 종교시설의 수익사업에 대한 재산세 과세를 통해 납세의 의무를 통해 공평 과세를 추구해야 함.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시 해당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박탈해야 하며, 종교전문인 등 종교 교직자의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전면 과세해야 함.

■ 기타

[1]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요구

- 한국노총이 해마다 요구하고 지적해왔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동계 참여 제고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 60여 명이 넘는 세발심 위원 중 임금 노동자의 입장을 대표할 노동계 위원은 1명에 불과함. 납세자를 대표하는 측면에서 노동자 대표위원 수를 늘려줄 것을 건의함

[2]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에 대한 답변 요청

- 기획재정부는 매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각 기관에 의견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이 단 한 건도 없이, 일방적으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이에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에 대한 담당 부서의 답변을 요청하는 바임.